전북지방환경청 종합감사 결과보고

2020. 1.

환 경 부
감사관실

목 차

Ⅰ. 감사 개요 ····· 1

1. 감사배경 및 목적 ····· 1

2. 감사대상 및 범위 ····· 1

3. 감사기간 및 인원 ····· 1

4. 감사 중점사항 ····· 1

Ⅱ. 감사 결과 ····· 2

1. 계약, 회계, 물품관리 부적정 ····· 3

2. 연구용역, 보조금 등 사후관리 부적정 ····· 6

3. 정기 지도·점검 등 미실시 ····· 7

4.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미준수 등 ····· 8

5. 기타 분야 ····· 9

Ⅲ. 현지 조치사항 ····· 11

Ⅳ. 모범사례 ····· 11

1. 통합허가 사후관리 선제적 대응으로 적극행정 실시 ····· 11

Ⅴ. 향후계획 ····· 12

Ⅰ. 감사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환경부 위임사무와 각종 지시사항 이행실태 등을 확인·조사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2. 감사대상 및 범위

○ **(대상기관)** 전북지방환경청

○ **(감사종류)** 종합감사

○ **(감사범위)** '15년 5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19.11.11.~29.(총 15일, 예비조사 5일 포함)

○ **(감사인원)** 감사반장 등 10명*(환경부 4, 산하기관 3, 시민감사 3)

* 환경부(감사담당관, 송윤철, 이영수, 송현우), 산하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자원공사 ○○○, 수도권매립지공사 ○○○), 시민환경감사관(김◎◎, 이◎◎, 남○○)

4. 감사 중점사항

○ 예산·회계, 인사, 국유재산·물품관리의 적정여부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행정처분

○ 수질, 지하수 등 측정망 설치·운영

○ 화학물질의 허가 및 신고, 화학사고 대응

○ 폐기물, 자연환경, 환경영향평가 협의 적정여부 등

Ⅱ. 감사 결과

< 처분요구 총괄(표)>

◇ 처분요구 21건(시정 2, 주의(경고) 14, 통보 1, 현지시정 4)

(단위 : 건수, 만원)

총계			변상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조치
건수	금액	인원							계 (명)	일반 (명)	시정완료 (금액)	인사자료 (인원)	비위 (인원)		
21	116	26	-	-	2 (116)	14 (26)	-	-	1 (-)	1 (-)	-	-	-	-	4

※ 모범사례 1건(통합허가 사후관리 선제적 대응능력 제고 등 적극행정 실시)

<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안)>

구분	지적사항	처분요구(안)
1	공무직 근로자 퇴직적립금 적립 및 지급 부적정	경고/시정
2	입찰 참가자(실적) 제한 부적정	주의
3	용역계약 지체상금 산출 부적정	주의/시정
4	관사 임대차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5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경고
6	물품관리 부적정	주의
7	연구용역 감독업무 부적정	주의
8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조치 미흡	주의
9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지도점검 소홀	주의
10	클린주유소 정기 지도점검 미실시	주의
11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기간 초과	주의
12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용역대가 지급방법 개선	통보
13	지정폐기물 실적보고 기한 내 미제출 사업장 조치 미이행	주의
14	녹색기업 재지정을 위한 환경법령 위반행위 대상 검토 미흡	주의
15	지하수수질측정망 기준초과 지점 적정 조치 미흡	주의
16	국가환경교육지원단 운영실적 보고 미흡	현지시정
17	정제연료유 공급계획서 수리방법 개선 필요	현지시정
18	자산취득비 성격의 물품을 일반수용비로 집행	현지시정
19	홍보용 기념품 관리 부적정	현지시정
참고	연구용역 사업비(보증보험료) 정산 부적정	보류
참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미통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정부합동 감사연계

1 계약, 회계, 물품관리 부적정

① 공무직 근로자 퇴직적립금 적립 및 지급 부적정

○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등으로 가입**

※ (확정기여형) 매년 정산(○), 매 1년마다 총임금의 1/12을 대상자의 계좌에 적립
(확정급여형) 매년 정산(×), 퇴직 전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재직일수에 따라 적립

○ **(실태)** 전북청 공무직 근로자 퇴직급여는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하였으나, 실제 적립·지급은 **"확정급여형"**으로 잘못 적립·지급

- '15.4~'19.5월에 **퇴직한 10명**에게 **금815천원*** **많게 지급**, '19.11월 현재 **재직 중인 공무직 근로자**(30명)의 퇴직금 **금3,889천원 부족 적립**

* 퇴직 직원 10명 중 5명은 과다지급(총137만원), 나머지 5명은 과소지급(총56만원)

⇒ **(처분의견)** 퇴직금 적립·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전북지방청 **기획과**에 대해 **"경고"**를 촉구하고, 잘못 산정한 퇴직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정하여 적립·지급하도록 **"시정"** 요구

② 입찰 참가자격(실적) 제한 부적정

○ **(기준)**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종합공사(30억 미만), 일반공사(3억 미만)는 **실적으로 입찰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도 **민간실적 불인정을 금지**하고 있음

○ **(실태) 소규모 공사**(2.7억, 1건*)에서 **실적제한**을 하고, **최근 4년간 4건****의 용역입찰에서 **공공실적만 인정**하여 **참가자격**을 **제한**

* ⊗⊗ ✣✣습지보호지역 생태복원사업, ** ❄❄❄❄ 자연생태계 모니터링(4~7단계)

⇒ **(처분의견)** 「국가계약법」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전북지방청 **기획과**에 대해 **"주의"** 요구

③ 용역계약 지체일수 산출 부적정

○ **(기준)**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 계약기한을 경과하여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완료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 **(실태)** 전북청 신청사 건립 시 **'❋❋❋ ❋❋ ❋❋❋❋ ❋❋인증' 용역**('15.12.24.~'16.02.23.)이 **계약기간보다 65일을 초과**하여 준공

- 이에 총 지체일수 65일에서 인증기관 심사, 설계도서 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50일, 24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5일(74만원)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나,

- 성과물 제출 후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7일)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 용역업체(✦✦✦✦정책연구원)에서 심의기간 등 일정 부족으로 용역중지 요청('16.1.27)하였으나 전북청에서 미승인

⇒ **(처분의견)** 지체일수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고 지체상금을 부과한 업무 관련자에 대해 "주의" 요구하고, 지체상금 부과에서 제외한 준공검사기간(7일)에 대한 금34만원은 환수하도록 "시정" 요구

담당부서 답변 및 검토결과

▷ **(답변내용)** 자료보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총 지체일수(65일)에서 보완 기간(총43일)을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

▷ **(검토결과)** 설계도서 수정·보완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고,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체상금 추가 부과

④ 관사 임대차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기준)**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전세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즉시 **권리보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북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관사업무의 중요사항**은 **내부결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실태)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전**에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 설정**(4건)하고, **계약기간 연장**(2건, 보증금 179백만원) **시 내부결재** 미실시

<근저당 말소 전 관사 전세권 설정>

(단위 : 백만원)

연번	관사명	매매가	先근저당(말소일)	전세권(설정일)
1	✧✧✧✧ 802동 1002호	230	150('19.03.04)	190('19.02.27)
2	✧✧✧✧ 805동 403호	230	90('19.03.05)	200('19.02.27)
3	✱✱ 102동 405호	106.5	29.8('14.05.27)	89('14.05.22)
4	✱✱ 101동 605호	106.5	84('13.12.13)	100('13.12.12)

⇒ **(처분의견)** 관사 임대차계약 시 내부결재 미실시 및 채권에 대한 권리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관련자에 대해 각 각 **"주의"** 요구

⑤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 **(기 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는 근무종료 후, 휴일 등 **근무자 식사비 등으로 지급하여야** 함

○ **(실 태)** 기획과 서무담당자가 3개의 카드로 약 10분 간격으로 2~3개소의 식당에서 각각 **특근매식비 카드 사용**

* 매식비 카드 개수 한계로 인해 초과근무 시 마다 매번 카드집행이 불가능하여 식당 외상 장부 기재 후 연말에 일괄 집행한 것으로 소명

<2017.12.28. 특근매식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카드번호	전표매출일	승인시간	매출금액	가맹점명
합 계			3,444,100	
9470-****-****-6943	2017/12/28	22:12:24	476,100	✲✲✲ 서곡점
9470-****-****-6943	2017/12/28	22:23:34	490,000	✳✳✳✳서곡점
9470-****-****-6943	2017/12/28	22:42:50	450,000	✳✳✳고깃집
9470-****-****-3950	2017/12/28	22:14:00	400,000	✳✳✳ 서곡점
9470-****-****-3950	2017/12/28	22:25:04	470,000	✶✶✶✶서곡점
9470-****-****-3950	2017/12/28	22:41:49	218,000	✷✷✷고깃집
9470-****-****-6950	2017/12/28	22:24:17	490,000	✸✸✸✸서곡점
9470-****-****-6950	2017/12/28	22:48:17	450,000	✹✹✹고깃집

⇒ **(처분의견)** 특근매식비 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담당자에게 **"경고"**, 부서장 및 팀장에게 각 각 **"주의"** 요구

⑥ 물품관리 부적정

○ **(기 준)** 「물품관리법」에 따라 **미사용 물품**은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관리, 불필요 시 불용 후** 관리전환·매각 등 조치하여야 함

○ **(실 태)** 청사 이전 시 발생한 물품을 소홀히 관리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물품 55점**(취득가 약 3억)을 **불용**(폐품)**처리**

- 불용처리 시 관리전환,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폐기처분하고, 불용(폐품)처리 후 컴퓨터, 프린터 등 부족분 다시 구매

⇒ **(처분의견)**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고, 물품 불용처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업무관련자에 대해 각 각 **"주의"** 요구

2 연구용역, 보조금 등 사후관리 부적정

① 연구용역 감독업무 부적정

○ **(현 황)** ㈜＊＊＊＊＊과 ＊＊＊유역 생태계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연구(Ⅴ~Ⅵ차년도)"용역계약을 체결('17.4.28~'19.4.27, 846백만원)

○ **(실 태)** 참여인력 일부(6명)에 대해 **보안각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참여인력 변경·승인하면서 자격요건 등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검토**

⇒ **(처분의견)** 연구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관련자에 대해 각 각 **"주의"** 요구

②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관리미흡

○ **(기 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2~3개월** 내에 **실적보고를 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시 보조금 삭감(10~50%내) 등의 조치가 가능

○ **(실 태)** ’16~’18년간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기, 하수도 등 9개 분야 보조사업 125건에 대해 제출 독촉 등 **조치 미실시**

⇒ **(처분의견)** 대기, 하수도, 폐기물 등 9개 분야 국고보조사업 업무 담당부서에 대해 각 각 **“주의”** 요구

[참 고] 연구용역 사업비(보증보험료) 정산 부적정

○ **(현 황)** ‘14.7.~’19.4. 기간 동안 ㈜❀❀❀❀❀과 “✿✿✿✿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연구” 용역(Ⅱ~Ⅵ차년도 용역) 계약 체결

○ **(실 태)** ① 참여인력 각 각의 **직급**(연구원·보조원 등) **및 참여율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직급별 평균참여율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계상, ‘Ⅴ’차년도는 ‘경비’ 항목의 합계액이 각각의 내역보다 적게(1,031,130원) 계상

②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증보험료’를 사업비에 계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승인하고, 사업비 정산 시 ‘보증보험료’ 지출내역을 인정함

⇒ ‘보증보험료’를 사업비에 포함하는 것이 위법사항인지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기획재정부 등에 유권해석을 받은 후 판단하고, 위법사항일 경우에는 2020년 감사 시 전북청을 포함한 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해 감사실시

3 정기 지도·점검 등 미실시

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지도점검 미실시

○ **(기 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센터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센터는 **구조관리현황**을 **매년**(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전북청에 제출**하여야 함

○ **(실 태)** ‘15~’16년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미실시,** 센터는 동 기간 구조관리현황 미제출

* 전북청 관할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1개소로 ❁❁대 ✪✪✪대학에서 운영

⇒ **(처분의견)**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지도·점검 미실시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관련자에 대해 각 각 **"주의"** 요구

② 클린주유소 정기 지도점검 미실시

○ **(기 준)** 「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클린주유소* 지정일로부터 매 **5년마다 시설물**(누유감지기, 경보장치, 유수분리조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07년 이후 관내 클린주유소 총 30개소 지정·관리

○ **(실 태)** **'17년** 점검 대상인 주유소 **2개소**(❋❋시1, ❄❄시1)**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해당 주유소는 '18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대장 미비치 등 지적함

⇒ **(처분의견)**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관련자에 대해 **"주의"** 요구

4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미준수 등

①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기간 초과

○ **(기 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작성·통보**하여야 함

○ **(실 태)** 최근 2년('18~'19년) 동안 검토의견을 통보한 192건 가운데 **115건(59.9%)이 검토 기한을 초과함**(최소 1일에서 최대 223일)

⇒ **(처분의견)**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의견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전북지방청 **환경평가과**에 대해 **"주의"** 요구

[참 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미통보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기 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사업의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을 **승인·확정 시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실 태)** '15.5.~'19.10. 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 2,172건 중 **390건에 대해** 승인기관이 협의내용 **반영 결과 미통보**

⇒ **(처분의견)**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미통보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감사와 연계**하여 감사실시(조사담당관실 정부합동감사팀)

5 기타 분야

①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용역대가 지급방법 개선

○ **(기 준)**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대행자는 **사업완료 후 2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하여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 시행

○ **(실 태) 사업 완료 시 사후 모니터링 비용을 포함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환**하고 있고, 사후 모니터링 결과 **미제출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독촉하여 제출받음**

※ '❋❋❋❋를 활용한 생태문화적 소생물서식지 복원사업' 등 '15~'19년간 총 9개 반환사업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결과 제출 지연

⇒ **(처분의견)** 생태계보전협력사업 실시와 사후 모니터링을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환경부 자연공원과**에 **"통보"**

② 지정폐기물 실적보고 기한 내 미제출 사업장 조치 미이행

○ **(기 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는 매년 **지정폐기물의 발생·처리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실 태)** '16~'18년도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23개소**에 대해 **과태료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

<지정폐기물 실적보고 미제출 사업장 현황('16~'18년)>

구분	위반사업장(개소)		
		미제출	제출기한 초과
2016년	2	1	1
2017년	4	3	1
2018년	17	17	-
계	23	21	2

⇒ **(처분의견)** 기한 내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관련자에 대해 **"주의"** 요구하고, 실적 미제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③ 녹색기업 재지정을 위한 환경법 위반행위 대상 검토 미흡

○ **(기 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환경법령을 위반**하여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 경우 취소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실 태)** 환경관리과에서 ❁❁❁❁❁(주)익산공장 녹색기업 재지정 검토를 위해 **환경법 위반행위 여부**를 화학안전관리단을 포함한 **관련 부서에 요청**하였으나,

- 화학안전관리단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개선명령 받은 업체가 있음에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미 회신**

- 이에,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련법령 위반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감점 없이** 녹색기업 **심사·평가 후 재지정**

※ 환경법 위반행위로 감점을 받아도 해당 업체는 녹색기업 재지정 점수보다 높음

⇒ **(처분의견)** 환경관련법령 위반행위를 통보하지 않은 전북지방청 **화학안전관리단**에 대해 **"주의"** 요구

담당부서 답변 및 검토결과

▷ **(답변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은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녹색기업에 대한 환경관리과의 환경법령 위반사항 조회요청에 관련 내용을 회신하지 않음

▷ **(검토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은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에 해당함(화학안전과 질의 회신, '19.12.18.)

④ 지하수수질측정망 기준초과 지점 적정 조치 미흡

○ (기 준)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의 **수질기준 초과 시** 관할 지자체 및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질관리토록 조치**하여야 함

*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은 오염우려지역(환경청 운영)과 일반지역(지자체 운영)으로 구분

○ (실 태) **최근 5년간**('15~'19년 상반기) 측정망 **5개 지점에서 총 17회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지자체 및 소유자에게 **미통보**

⇒ **(처분의견)** 지하수수질측정망 수질기준 초과를 통보하지 않은 전북지방청 **측정분석과**에 대해 **"주의"** 요구

Ⅲ. 현지 조치사항

번호	지적사항	현지 조치사항
1	o 자산취득비 성격의 물품을 일반수용비로 집행	- 향후 선풍기 등은 자산취득비로 구매하고 구매한 선풍기는 규정에 따라 관리 할 것
2	o 국가환경교육지원단 운영 실적보고 미흡	- 향후 국가환경교육지원단 운영실적 보고는 규정 대로 실시할 것
3	o 정제연료유 공급계획서 수리 방법 개선 필요	- 정제연료유 공급계획서 수리방법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화 할 것
4	o 홍보용 기념품 관리 부적정	- 기념품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할 것

Ⅳ. 모범 사례

1 통합허가 사후관리 선제적 대응 추진 등 적극행정 실시(환경관리과)

□ 추진배경

○ 통합허가 사후관리업무의 위임('20년)에 대비 통합허가 사후관리 체계 선제적 구축 준비 필요

○ ‘19년 본부 국감 시 통합허가 사후관리 사전준비 철저 당부(10.2, ❊❊❊의원)

※ 8개 유역(지방)환경청 최초로 사후관리 사전 준비팀 구성・운영

□ 추진사항

○ 사후관리업무 사전준비팀 구성*(9.24)·운영 및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10.23)하여 동반자적 환경관리 성장체계 마련

* 전북청·통합허가과·공단·❊❊에너지㈜, ** 우리청-❊❊에너지㈜-공단

○ 발전업 및 협약기업 공정, 배출·방지시설 이해, 중점관리사항 논의를 통한 허가검토서 등의 현장적용 가능성 토론(9~12월)

※ 허가서 점검등 사전검토(9월) → 도상점검(10월) → 현장점검(총3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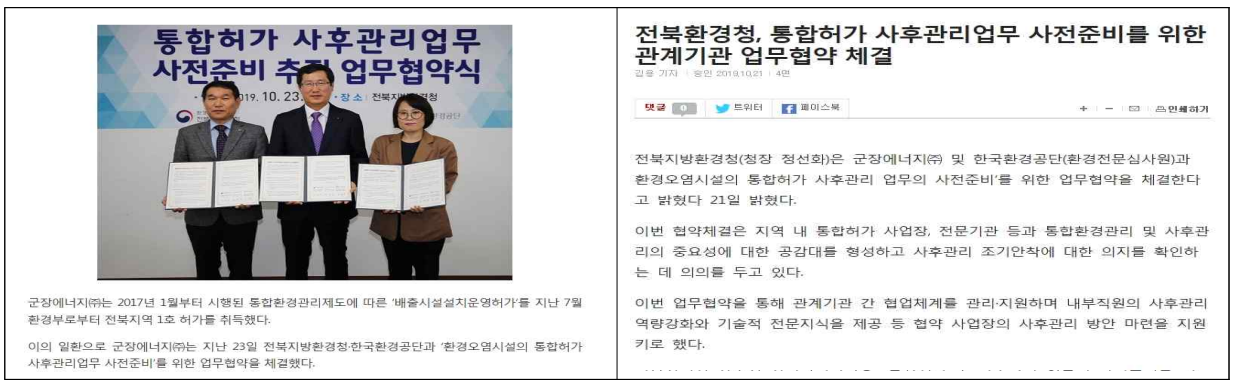
○ 연구모임(CoP) 구성·운영(9.24)

- 사후관리 등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이해, ❊❊에너지㈜ 최적가용기법(BAT) 적용현황 및 효과 등 발표·토론*(약 20여명)

□ 추진성과

○ 우리부 월간 현안점검 회의 시 모범사례로 소개(11.11)

○ 사후관리업무 사전준비를 위한 업무협약 등 언론보도



Ⅴ. 향후 계획

□ 자체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개최(‘20년 1월)

□ 지적사항에 대해 전북청, 본부 관련부서 등에 조치 요구(‘20년 1월)

○ 감사결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 모범사례 부서 장관표창 등 추천